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85,433,000	8,562,990
일반회계	272,588,000	8,177,640
특별회계	12,845,000	385,350
기타특별회계	12,845,000	385,35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688,000	110,64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672,000	50,16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61,000	25,830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474,000	14,220
새마을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360,000	10,800
양수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1,062,000	31,860
치수사업특별회계	3,888,000	116,64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840,000	25,2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683,463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